

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

2019년 12월 3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29일
기 획 재 정 부 장 관

- 다 음 -

1. 부과 내용

가. 부과대상 공급국 : 베트남

나. 부과대상 물품 :

-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가 6mm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
 - 다만, 두께가 6mm이상이고, 너비가 220mm이하이며, 길이가 2,000mm이하로서 측면을 요철(Tongue and Groove)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
- 관세품목분류번호 : HSK 4412.31.4011, 4412.31.4019, 4412.31.4021, 4412.31.4029, 4412.31.5010, 4412.31.5090, 4412.31.6010, 4412.31.6090, 4412.31.7010, 4412.31.7090, 4412.33.4010, 4412.33.4020, 4412.33.5000, 4412.33.6000, 4412.33.7000, 4412.34.4010, 4412.34.4020, 4412.34.5000, 4412.34.6000, 4412.34.7000, 4412.39.9000, 4412.99.4100, 4412.99.5100, 4412.99.6100, 4412.99.9100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덤핑방지관세율(%)
베트남	사비(SAVI CO. LTD)	10.65%
	탄흥 (Thanh Hung Import-Export Company Limited)	10.27%
	준마 푸토 (Junma Phu Tho Company Limited)	10.55%
	키우티 준마 (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)	
	옌바이 (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)	9.25%
	롱자 (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)	9.18%
	그 밖의 공급자	10.54%

라. 부과기간 : 2020. 5. 29. ~ 2020. 9. 28. (4개월)

마. 기타 행정사항

-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

2. 부과이유

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별첨 자료 게재 안내>

아래의 별첨 자료는 [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/법령/훈령·고시/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]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.

1. 베트남산 합판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
(게재 생략)
2. 베트남산 합판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
(게재 생략)